

3. 의견제출

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등록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30	대한적십자사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신희영	2000.5.30.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02) 3705 -3512	공공 의료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20-93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제5조)
- 나.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제7조 및 제8조)
- 다.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제12조 및 제13조)
-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제14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신고)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호다목)